

위치정보 규제의 최근 현안 -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-

조 용 혁

2016. 11. 11.

- ▶ (일반)
- **▶** (미국)

(Geolocation Privacy and Surveillance) Act (S. 237) 등 위치정보(Geolocation Privacy)의 보호에 관한 복수의 입법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

- ▶ [일본]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개별법은 없으며,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의해 규율
 - 한편, 총무성고시인 「전기통신사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」(電気通信事業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)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
- ▶ [유럽] 위치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며,
 - 「전자통신 부문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2002/58/EC (프라이버시 및 전자통신에 관한 지침)」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지침들 속에 위치정보의 정의와 수집, 이용, 제3자 제공과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시켜서 규율
 - 영국, 독일 및 프랑스 등 EU회원국은 EU지침이 반영된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에서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

미국

(Wireless Communications and

Public Safety Act of 1999)」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「통신법(Communication Act of 1934)」 제222조에 따른 "고객소유 네트워크 정보(CPNI: Customer Proprietary Network Information)"로 분류

- 위치정보는 CPNI로서 명시적 사전승인(customer's express prior authorization)이 없는 사용·공개·접근 금지 * City of Seattle's Privacy Policy는 PII의 법적 정의에 location을 명시적으로 포함
- ▶ 현재 Geolocation Information Protection에 관한 복수의 입법안이 연방 상·하원에서 논의 중
 - Location Privacy Protection Act of 2015 (S. 2270)
 - → Geolocation Information: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통신장비의 사용 또는 작동으로부터 유래되거나 생성된 것으로서, 통신의 내용이 아니면서, 해당 장비가 위치한 도로명과 도시명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것
 - → 위치정보서비스: GPS 또는 그 밖의 지도, 위치 또는 방향안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
 - → 전자통신장비를 이용하는 개인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 금지
 - → 부모·법정후견인이 미성년아동·피후견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및 긴급서비스 등의 예외 사유 마련
 - → 연 1,000개 이상의 전자통신기기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대상자는 ① 수집하는 지리위치정보의 속성, ② 처리목적, ③ 제공받는 자, ③ 동의철회방법 등을 포함하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여야 함
 - Online Communications and Geolocation Protection Act (H. R. 656)
 - Geolocation Privacy and Surveillance Act(약칭 GPS Act) (S. 237)

일본

電氣通信事業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に關するガイドライン (平成 10年 12月 2日 郵政省告示 第570号)

- ▶ 현재 '15년에 개정된 총무성 고시인 「전기통신사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」**을 통해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기준 제시
 - ** 電気通信事業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(平成 16年 8月 31日 総務省告示 第695号, 最終改正 平成 27年 6月 24日 総務省告示 第216号)
 - 위치정보 : 이동단말장치를 소지한 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발신하는 자의 정보가 아닌 것
 - → 기지국 영역 혹은 위치등록 영역 정도 또는 그것들보다 좁은 범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, 이용명세에 기재된 착신지역(단위요금구역 등)과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않음
 -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, 재판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경우 그밖에 위법성조 각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함
 - → 위치정보는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특히 보호의 필요성이 높으며, 통신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이므로 통신비밀에 준하여 강하게 보호
 - 위치정보서비스의 제공
 - → 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위치정보 제공, ② 위치정보 제공에 대해서 이용자의 인식(화면표시, 울림, 진동 등) 및 예측가능성 확보, ③ 위치정보에 대해서 적절한 취급, ④ 제3자와의 제휴 시 제휴계약과 관련된 약관 등의 기재를 통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배려 등
 - 긴급구조

유럽

유럽

- ▶ (영국)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(EC Directive) Regulations 2003」이 위치정보 (location data)를 정의하고, 위치정보 처리의 제한에 관해 규정
 - 전자통신네트워크 또는 전자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또는 가입자에 관한 위치정보는 ① 당해 정보로 부터 이용자 또는 가입자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또는 ② 부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로서 이 용자 또는 가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처리될 수 있음
- ▶ (독일) 「Act on Telecommunications」(Act of June 22, 2004, amended up to the Act of August 7, 2013)에서 위치정보에 관한 규정 마련
 - 위치정보는 매우 민감한(highly sensitive) 정보로서 동의가 없으면 처리되어서는 아니되며, 목적범위 내에서만 수집되고 이용되어야 함
 - 이용자는 동의내용을 철회할 수 있어야 하고, 필요가 없어지면 즉시 폐기하거나 익명화(anonymous) 하여야 함
- ▶ (프랑스) 전자통신서비스제공자(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; CSPs)에 의한 위치 및 통신정보 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해서는 「Postal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」이 다루고 있음
- ▶ (기타) 핀란드의 「Information Society Code (917/2014)」, 스웨덴의 「Electronic Communications Act」 Chapter 6 Section 9, 벨기에의 「Electronic Communication Act」 제123조 등